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2521
----------	------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3월 28일 최진혁 의원 (찬성 18인)
-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진혁 의원)

#### 1. 제안이유

- 청년 장해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귀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문화하고, 주거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 나.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한 장해 군인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주거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뜻의 됨.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기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의 정책이었음.
- 또한,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미선정된 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한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2년 본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음.

## 가.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관련 현황

-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9~39세 사이의 청년 가운데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장해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sup>1)</sup>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장해로 전역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제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

##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라 보훈보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에서는 군 장애보상금 지급 및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로 대상 인원을 산출 가능하나, 군 장애보상금 미지급자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 대상 밸굴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해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 국가보훈대상자, 부상제대군인 등
- 주요사업 : 대상자 밸굴, 유공자 선정 지원, 정신건강 회복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보훈 선양사업 등
- 추진방법 :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대행 운영 중)
- ‘25년 예산편성 현황 : 435,461천원

- 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보훈 상담지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협력 등으로 보훈대상자 밸굴</li><li>• 외부변호사 법률 상담</li><li>• 행정지원 대상 주기적 관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li><li>• 자조모임 지속 지원</li><li>• 자발적 모임 활성화 및 코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실무 교육 등 취업지원 강화</li><li>• 市일자리센터 알선서비스 연계</li><li>•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li></ul>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24년도 센터의 주요 상담실적은 다음과 같음.

분류	법률상담	의료자문	소송대리	유공등록지원	보훈상담	심리·정신 재활 지원
	33건	2건	14건	6건	749건	314건

####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청년 장해 제대군인 주거안정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는 ‘23년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19~39세 청년부상 제대군인 중 반지하주택 거주 등 주거취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임대주택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는 ’24년 기준 총 10호를 공급하였음.
- 시에서는 SH 기존 주택매입임대를 추가로 연계하는 등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음.

##### ※ 청년장해제대군인 대상 임대주택 운영현황 (2024년)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47(이문동)
  - 1호선/경춘선 회기역 300m(도보 4분), 경희대병원 600m, 삼육서울병원 850m
- 주택규모 : 오피스텔 1개동 144호(지하 2층~17층)
- 공급주택 : 10호 (전용14~16㎡ 원룸)
- 임대조건 : (청년)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28~29만원(시세 40~50% 수준)

- 본 조례개정안은 이처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려 하는 것임.

##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u>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u> 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 ----- ----- -- <u>창업·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u> ----- -----.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u>&lt;신설&gt;</u>  5. (생략)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다. 집행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은 이미 202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함.

### 3 종합의견

- 청년장해 제대군인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시장이 그들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의미를 가진다 하겠음.
- 또한, 이미 서울시는 LH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을 기추진해오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으로 인한 별도 예산 소요 등 의 쟁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21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28일  
발의자: 최진혁 의원(1명)  
찬성자: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이종환,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청년 장해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귀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문화하고, 주거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업 · 일자리 정보 등”을 “창업 · 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u>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u> 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 ----- ----- ----- ----- ----- ----- ----- ----- ----- ----- ----- -- <u>창업·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을</u> ----- ----- -----.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lt;신 설&gt;</u> 5. (생 략)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제2항제5호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sup>1)</sup>가 있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문의하였으나 확인결과<sup>2)</sup> 기존 물량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매입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사업추진 형태 검토 필요성] 주택공급사업은 통상 사업추진 형태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 형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가령 전체 공급물량(모수)을 유지한 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일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지원대상을 위해 별도 물량을 매입할 경우 매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함
- 2) [검토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결과 해당 추진사업은 기존 공급물량 활용사업으로 이에 해당규정에 따른 주택매입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